

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	처리기간	30일
신청인	기관 또는 단체명		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	
	대표자 성명		생년월일	
	주소		전화번호	

「국가유산영향진단법」 제24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국가유산청장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1.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2.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 확보 현황 자료(임차계약 또는 공동사용계약을 통해 교육시설의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서를 포함합니다) 3. 전문 교수요원 및 전담관리자 확보 현황 자료 4. 영향진단등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관련 사업 추진실적(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 5. 운영경비 조달계획서	수수료 없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1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 2. 사업자등록증명(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)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처리절차

신청서 작성

➡

접 수

➡

검 토

➡

심 사

➡

결 재

➡

지정

➡

게시

신청인

처리기관: 국가유산청